#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수익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1. ‘수익’이란 무엇입니까?

수익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문단 7), 광의의 수익은 수익과 차익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구 분 | 수익 |
|---|---|
| (1) 정의 |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문단 7) |
| (2) 결과 | 수익 발생 ⇒ 자본 증가<br>☞ 그러나, 자본의 증가로 수익 발생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
| (3) 차익과의 관계 | 광의의 수익 ⊃ 차익 |

☞ 현행 기준서 제4호 문단 12에서는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는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수익’은 영업수익만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은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금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항목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문단 1).

☞ 그러나, 제3자 및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익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수수료 금액뿐입니다(문단 8).

또한, 현행 기준서 제4호에 비해, 제1018호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이 추가로 적용 배제되지만, 어로어업이나 벌목업 등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 적용범위 |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 |
|---|---|---|
| 차이점 |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은 적용 범위에 포함됨. |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 | 어로어업이나 벌목업 등의 수익인식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어로어업이나 벌목업 등의 수익인식은 적용 범위에 포함됨. |
| 공통점 | 농산물, 임산물 및 가축의 '자연적 가치증가'에 대해 적용 배제 | |
| | => 명시적 언급 없음 | => 제1041호 농림어업 적용 |

# [수익의 측정]

## 3.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의 측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익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거래의 형태 | 수익측정 방법 | | |
|---|---|---|---|
| (1) 일반적인 상황(9) |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 | |
| (2) 판매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11) | 미래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주2)] | | |
| | - 대가의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함<br>- 내재이자율이란 ① 또는 ② 중 더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br>①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율<br>②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 | |
| (3)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12) | 성격과 가치가 **유사** (동종) |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
| | 성격과 가치가 **상이*** (이종) | **원칙** |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
| | | **예외** |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br>※ 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이전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 4. 수익은 판매한 재화 및 제공한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서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문단 9).

☞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문단 7).

☞ 따라서, 만약 판매자가 매매할인이나 수량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면, 수익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문단 10).

# [재화의 판매]

## 5. 재화의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단 15).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문단 14).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th></tr>
<tr><td>(1)</td><td colspan="6">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td></tr>
<tr><td>(2)</td><td colspan="6">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td></tr>
<tr><td>(3)</td><td colspan="6">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5">(4)</td><td colspan="6">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td></tr>
<tr><td colspan="6">-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경제적효익에 대한 유입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문단 18).</td></tr>
<tr><td>시간의 흐름</td><td>$T_1$</td><td>→</td><td>$T_2$</td><td>→</td><td>$T_3$</td></tr>
<tr><td>상황</td><td>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음.</td><td></td><td>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해소됨.</td><td></td><td>추후 다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게 됨.</td></tr>
<tr><td>회계처리</td><td>수익 인식 X</td><td></td><td>수익 인식 O</td><td></td><td>비용 인식 O</td></tr>
<tr><td rowspan="2">(5)</td><td colspan="6">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6">-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br>받은 대가는 수익이 아니라 ⇒ 부채로 인식(문단 19).</td></tr>
</table>

☞ 현행 기준서 제4호에서는 수익인식기준으로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1018호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위험의 중요도에 따라 수익 인식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문단 16,17).

| 구 분 | 위험의 중요도 | |
|---|---|---|
| |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거래 이후 판매자가 **중요하지 않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 | ⇒ **수익 인식 X**<br>판매로 간주 X | ⇒ **수익 인식 O**<br>판매로 간주 O |
| 사 례 | -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br>-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br>-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br>-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은 이전된 경우(반품판매)<br>-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소매판매<br>⇒ 판매시점에 수익 인식<br>단, 반환금액 추정하여 부채 인식 |

# [용역의 제공]

## 6. 용역제공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비용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수익은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문단 28).

| 구 분 | 용역 제공의 성과 | | |
|---|---|---|---|
| |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 |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 | |
| | | 원가의 회수가능성 | |
| | | 높음 | 높지 않음 |
| 수익 |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 인식된 비용 중 회수가능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 인식 | 인식하지 않음 |
| 비용 | 발생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 | 비용 인식 | 발생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 |

용역제공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한 경우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문단 20).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 구 분 | 요 건 |
|---|---|
| (1)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 (2)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 (3) |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 (4) |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 7. 이자수익, 료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의 수익인식 기준 및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들 수익은 아래의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문단 29,30).

| 구 분 | 수 익 인 식 기 준(문단 29) | 회계처리 방법(문단 30) |
|---|---|---|
| 이자수익 |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br>-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 ->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 |
| 로열티수익 | | -> 계약의 실질을 고려하여 발생기준으로 인식 |
| 배당수익 | | ->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 이자부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처음 받은 이자는 반드시 취득 이전 기간과 취득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취득 이후 기간의 이자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문단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문답식 요해 시리즈(1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수익

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문답식 요해 시리즈는 기준서 본문의 내용을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기준서 이용자가 보다 쉽게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서 본문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전체 원문대신 기준서의 해당 문단번호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요해 시리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문과 함께 기준서 이해를 위한 가이드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